의 안 번 호	제 223 호		
의 결			
연 월 일	(제 회)		

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국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3월 일

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국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3 발의연월일 : 2023년 3월 일

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함

2. 주요내용

- O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 선정 등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O 사업 위탁 및 안전관리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- O 협약체결 및 지도·감독 등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O 관계법령: 붙임

○ 조례안예고 : 2023. 3.

O 협 의 :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에너지과

O 비용추계: 붙임

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"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, 공급배관,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2. "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"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 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써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 를 말한다.
- 3. "공급배관"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.
- 4. "도시가스 미공급지역"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.
- 5. "경제성 미달지역"이란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지역(이하 "도시가스 미공급 농어 촌지역"이라 한다)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이 우선하여 반영되도 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
- 2. 배분기준 및 수요조사 기준
- 3. 지원 대상 농어촌지역
- 4.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우선 적용 방안
- 5.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지원)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액 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또는 설계비·감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지원 대상의 선정 등) ① 시장·군수는 관할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 촌지역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 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, 사업의 추진 가능성,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해당 농어촌지역 주민의 사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있다.
 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・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지원 대상이나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7조(사업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·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,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(안전관리)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

- 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시설·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이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 상황 등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협약체결)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·군수 및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도·감독 등)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·군수로부터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 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・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보조금의 반환 등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 - 1.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2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
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4.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
- 제47조(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8. 20.>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8. 20.>

□ 도시가스사업법

- 제18조의3(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) ① 시·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 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19조(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)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 8. 13.>
 - 1.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 가 시·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
 - 2. 철도·고속철도, 상·하수도, 하천,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
 - 3. 지리,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한 경우
 - 4.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
 - 5.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 설치·지원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및 에너지복지 실현

2. 비용발생 요인

O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

3. 관련조문

- O 안 제5조(지원)
- O 안 제7조(사업의 위탁)
- 안 제8조(안전관리)

4. 비용추계 결과

- 추계의 전제
 - 재정수반요인 :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관한 소요예산
 - 추계 기간 : 2023년부터 2027년부터 5년간으로 함
- 추계결과 : 136억원(국 30 도비 45.2, 시군 47.2, 자부담 13.6)
 -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: 15개소 × 4억원 = 60억원 (국 30, 도 7.2 시군 16.8 자부담 6)
 -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(자체) : 19개소 × 4억원 = 76억원 (도 38시군 30.4 자부담 7.6)
- O 재원조달방안 : 국비, 도비, 시군비, 자부담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(세출)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계	13,600,000	2,400,000	2,800,000	2,800,000	2,800,000	2,800,000
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	6,000,000	1,200,000	1,200,000	1,200,000	1,200,000	1,200,000
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(자체)	7,600,000	1,200,000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	
	세	입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	소형지	.PG 허장탱크 급사업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세 출		2,400,000	2,800,000	2,800,000	2,800,000	2,800,000	13,600,000	
	소형지	.PG 위장탱크 급사업	1,200,000	1,200,000	1,200,000	1,200,000	1,200,000	6,000,000
	소형지	.PG 허장탱크 업 (자체)	1,200,000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7,600,000
재원 조달		2,400,000	2,800,000	2,800,000	2,800,000	2,800,000	13,600,000	
	소	: 계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의존 재원	보	조금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	지방	·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	: 계	744,000	944,000	944,000	944,000	944,000	4,520,000
	지	방세	744,000	944,000	944,000	944,000	944,000	4,520,000
	세요	지수입	-	-	-	-	-	-
시군비		816,000	976,000	976,000	976,000	976,000	4,720,000	
기타(자부담)		280,000	280,000	280,000	280,000	280,000	1,360,000	